법인 간 의존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가장 흔한 운영상의 질문은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수행한 CDD에 의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추크에서 온보딩된 고객이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입니다.

싱가포르 측에서 보면, PSN02는 제II장에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하에 그룹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의존을 허용합니다. 제3자는 FATF 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요건의 적용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CDD 정보를 즉시 확보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은 계속 싱가포르 회사에 있습니다.[1] 추크의 SRO 회원사는 AMLA에 따라 소속 SRO로부터 AML/CFT 감독을 받으며, FATF는 SRO 감독을 스위스 금융중개업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며, MAS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회사는 그 평가를 문서화하고, 신원확인 자료를 자체 시스템에 보관하며, 자체 스크리닝과 자체 위험등급 평가를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스위스 측에서 보면, AMLA는 금융중개업자가 고객 신원확인과 실질소유자 확인을 서면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제3자는 적절히 선정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중개업자는 책임을 그대로 지고, 서류는 중개업자의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2] MAS의 감독을 받는 싱가포르 MPI는 적절한 수임인입니다.[3] 이 경우에도 스위스 법인은 서류를 보관하고, SRO 규정에 따라 자체 위험분류를 수행하며, 스위스 서식(특히 실질소유자 신고서)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룹이 이를 미리 반영해 두지 않는 한 싱가포르 절차에서는 이러한 서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 설계는 두 제도의 요건을 합친 내용을 한 번에 수집하고, 같은 데이터로부터 두 법인의 서류(싱가포르 PSN02 기록과 스위스 SRO 서식)를 생성하는 공동 온보딩 절차입니다. 그 후 스크리닝, 위험등급 평가, 모니터링은 고객 관계를 보유한 각 법인이 주관하여 별도로 진행합니다. 고객은 두 세트의 약관에 서명하고 두 세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기초 서류는 한 번만 제공합니다.

사례

홍콩의 한 패밀리오피스가 수탁과 장외(OTC) 거래를 위해 그룹의 추크 AG에 온보딩됩니다. 추크 AG는 패밀리오피스 회사, 그 이사 및 실질소유자의 신원확인 서류를 수집하고 스위스 Form K 지배자 신고서를 받습니다. 추크 AG는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역외 구조와 보유 자산 규모를 이유로 고객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며, 재산 형성 경위(source of wealth)에 관한 증빙을 받고,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기록합니다. 6개월 후 이 패밀리오피스가 싱가포르 MPI의 거래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MPI는 PSN02 para. 9에 따라 추크 AG의 신원확인과 검증에 의존하고, 그 데이터와 서류를 자체 시스템으로 가져옵니다. MPI는 싱가포르 목록과 OFAC 목록을 대상으로 자체 스크리닝을 하고, 자체 위험 모델에 따라 고객 등급을 평가하며, 이번에도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MPI는 재산 형성 경위 증빙이 제V장에서 설명한 싱가포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습니다. MPI의 파일에는 추크 AG에 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한 의존 평가가 기록됩니다. 고객은 MPI의 약관과 싱가포르 신고서에 서명하며, 새로운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두 법인은 각자의 고객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등급 변경 사항을 그룹 프로토콜을 통해 공유합니다.

주

1. MAS Notice PSN02, para. 9(제3자에 의한 조치 수행). 그룹 법인에 대한 의존 조건을 포함합니다. Guidelines는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 프로그램이 그룹 법인에 대한 의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
2. AMLO-FINMA, 제28조–제29조(실사 의무의 제3자 위임) 및 SRO 규정의 해당 조항. 이들은 책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서면 계약에 따른 신원 확인과 실질소유자 확인의 위임을 허용합니다. ↩
3. AMLO-FINMA, 제28조 제1항(신중하게 선정되고 지시를 받은 제3자에 대한 위임, 중개업자의 책임 유지) 및 제29조(수임인은 그 자체로 동등한 감독을 받는 금융중개업자이거나 서면 계약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어야 함). SRO 규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